

학교 보건 행정조직

김 지 주

〈서울시 교육위원회 체육교육과 보건계장〉

* 목 차 *

1. 조직의 개념

가. 조직의 뜻

나. 조직의 형태

2. 학교보건 행정조직

가. 문교부조직

나. 체육부조직

다. 특별시·직할시·

도교육위원회의 조직

라. 시·군교육(구)청 조직

마. 학교의 조직

바. 학교보건관리기구

참고문헌

1. 조직의 개념

가. 조직의 뜻

현대를 조직의 시대라 부른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부터 조직의 구성원이 되며 하루도 조직으로부터 벗어나서 생활하지 못한다.

조직이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동시에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의 체계이다. 따라서 추구하는 공동목표나 수행하는 목적이 변동되면 조직도 바뀌어지는 법이다.

조직이란 말은 과정과 구조를 동시에 뜻한다. 과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조직한다”는 것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가져다 줌을 의미한다. 조직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질서가 있는 것이고, 예측할 수 없으면 혼돈이 있는 것이다. 즉 조직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구조적인 입장에서 “조직”을 의미한다.

나. 조직의 형태

바람직한 조직이란 그 조직내의 각개인이 공통목

적을 효과있게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바람직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조직의 각종 요소간에 권한 및 책임의 분담등 적절한 구조적 및 기능적 관계를 발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조직의 구조적 개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직구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의 구별이며 학교보건의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와같은 효과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1)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공식조직이란 정부의 법령 또는 직제에 규정된 조직을 말한다. 공식적 조직은 권한의 계층, 명료한 책임분담, 표준화된 업무수행, 비정(非情)의 인간관계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비해 비공식조직 또는 자생적조직은 자연발생적조직으로서 형식적 조직체 안에 있는 성원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준거집단 또는 심리성집단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자발적인 협력관계 감상(感傷)의 논리에 의거한 행동방식을 특색으로 한다.

이 자연 발생적조직은 공식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건설적 또는 파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2) 계선조직, 참모조직, 보조조직

계선조직은 행정이나 경영에 있어서 국장-과장-계장-계원 등의 수직적인 지휘·감독 계통을 이루고 있는 명령적 집행기능을 말하며 참모조직은 계선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자문·지원하는 조성적 촉진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문교부의 경우 기획관리실이나 장학편수실이 이에 해당한다. 보조조직은 보조기관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계선조직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계선조직과는 별개로 그 외곽 내부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문교부장학편수실의 편수관리관이라는 계선조직의 국정교과서 편찬에 관한 업무수행에 보조하기 위해 있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그 산하에 있는 국정교과서 인쇄공장의 조직은 보조조직에 해당한다.

(3) 집권화와 분권화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 즉, 중앙집권이라고 하고 행정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지방정부의 자주성 능률성이 보장되는 경우를 지방분권이라고 한다.

2 학교보건 행정조직

가. 문교부조직

교육·과학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검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하부조직으로는 기획관리실, 공보관, 비상계획관, 감사관, 총무과, 장학편수실, 대학정책실, 보통교육국, 교직국, 과학교육국, 사회국, 체육국 및 교육시설국을 두며,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관

(가) 감사 및 정화계획의 수립·조정

- (나) 문교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다)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라) 감사원 감사의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의 처리
- (마) 진정에 대한 조사·처리
- (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정화업무 지도·감독
- (사) 정화담당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 (아) 정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 (자) 기타 장관이 감사 및 정화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

(2) 총무과

- (가) 보안
- (나) 관인관수
- (다)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관리
- (라)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
- (마)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바) 물품구매 및 조달
- (사) 차량·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아) 기타 부내 다른 실·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기획관리실

- (가) 기획예산담당관
 - 1) 교육정책의 종합·조정
 - 2) 중장기교육계획 관리
 - 3) 기본운영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
 - 4) 교육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연구
 -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6) 중앙교육협의회의 운영
 - 7)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리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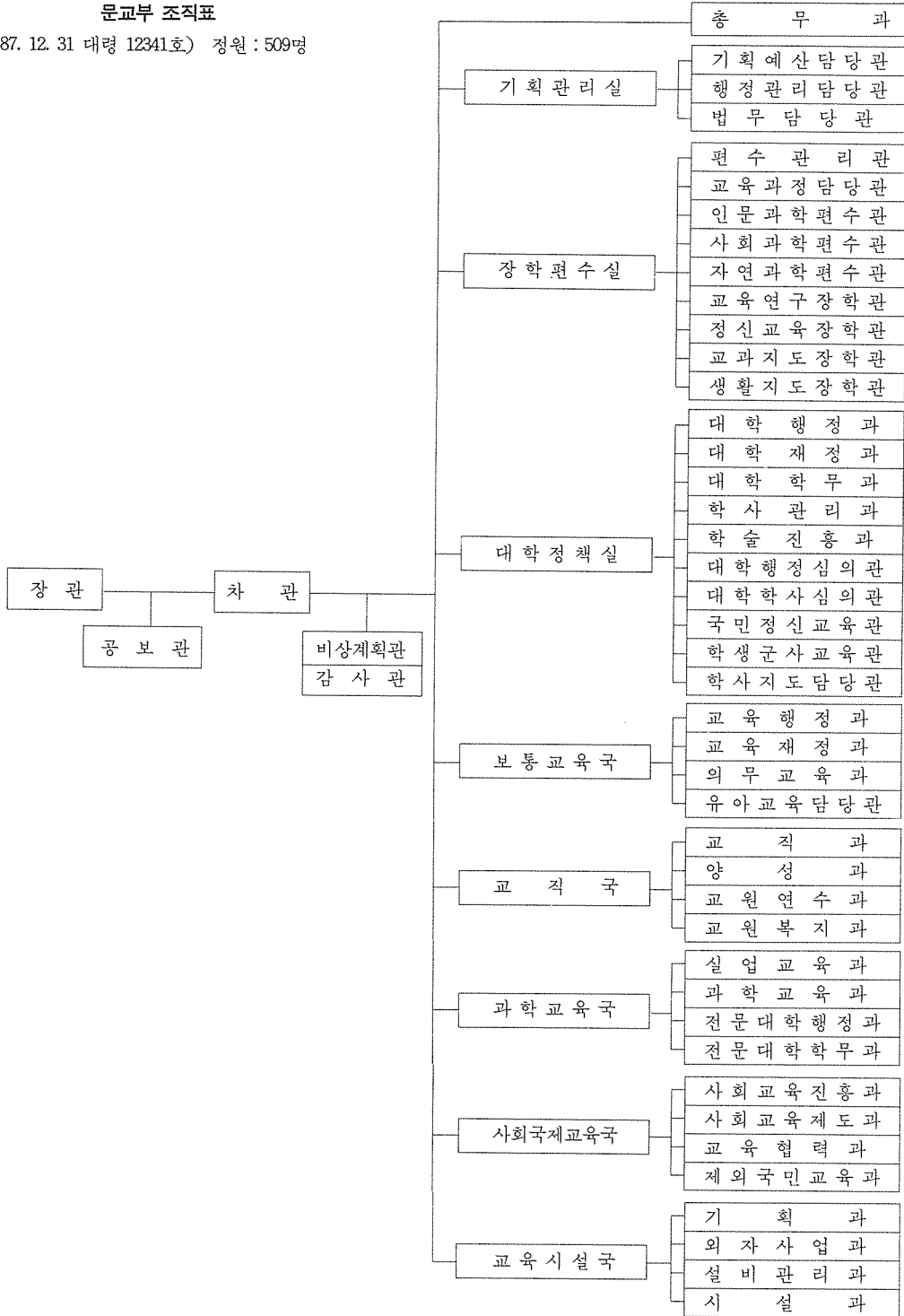
(나) 행정관리담당관

- 1)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3) 행정관리 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감독
- 4)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 5) 간행물 발간의 조정
 - 6) 보고통제 및 관리
 - (대) 법무담당관
 - 1) 법령·조례·규칙안의 심사
 - 2) 법령의 해석
 - 3) 각종 법인·사회단체의 정관심사
 - 4) 행정심판
 - 5) 소송업무의 총괄
 - (4) 장학편수실
 - (가) 교과지도장학관(장학업무중)
 - 1)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 2) 학습지도방법 및 교육평가의 연구·개선
 - 3)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의 운영 지도
 - 4) 교육연구원의 운영지도
 - 5) 중앙교육평가원의 지도·감독
 - (나) 생활지도장학관(장학업무중)
 - 1) 학생생활지도
 - 2) 교육행사의 후원 및 지도
 - 3) 학생진로지도
 - 4) 학생수련기관의 운영지도
 - 5) 학생관련문제의 종합대책수립
 - (5) 보통교육국
 - (가) 교육행정과
 -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도·감독
 - 2)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 3) 제 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 4) 제 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정원의 관리
 - 5) 교육기관소속 5급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계획수립 및 그 실시와 교육기관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 6) 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인사관리
 - 7) 공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지 조성업무의 지도·감독
 - 8) 고등학교 평준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나) 교육재정과
 - 1)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지도·감독
 - 2) 교육비 특별회계의 기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3)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및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에 관한 재정감독
 - 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업료 및 학생 부담금의 조정
 - (대) 의무교육과
 - 1) 국민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지도·감독
 - 3) 의무교육실시 계획의 수립
 - 4) 특수교육진흥 계획의 수립
 - 5)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 7) 학교보건요원의 양성 및 지도
 - 8) 학생 및 교직원 신체검사의 관리
- (6) 교직국제국
 - (가) 교직과
 - 1)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 2)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 3)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 4) 교직단체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문교부 조직표

(87. 12. 31 대령 12341호) 정원 : 509명



(나) 양성과

- 1) 교원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교원양성제도의 연구·개선
- 3)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 4) 사범대학(대학교의 사범대학과 교육학과를 포함한다)의 학과의 설치·폐지·학생정원의 조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5) 교직과정 및 교직학과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 6) 교원자격검정의 관리

(다) 교원연수과

- 1)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 2) 교원연수제도 및 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 3) 교원의 각종 연수
- 4) 교원자격의 추천검정
- 5) 중앙교육연수원의 지도·감독

(라) 교원복지과

- 1) 교육공무원의 보수제도
- 2) 교육공무원의 후생복지
- 3) 대한교원공제회의 지도·감독

4)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지도·감독

5) 교원의 업무량조정계획의 수립 및 추천

나. 체육부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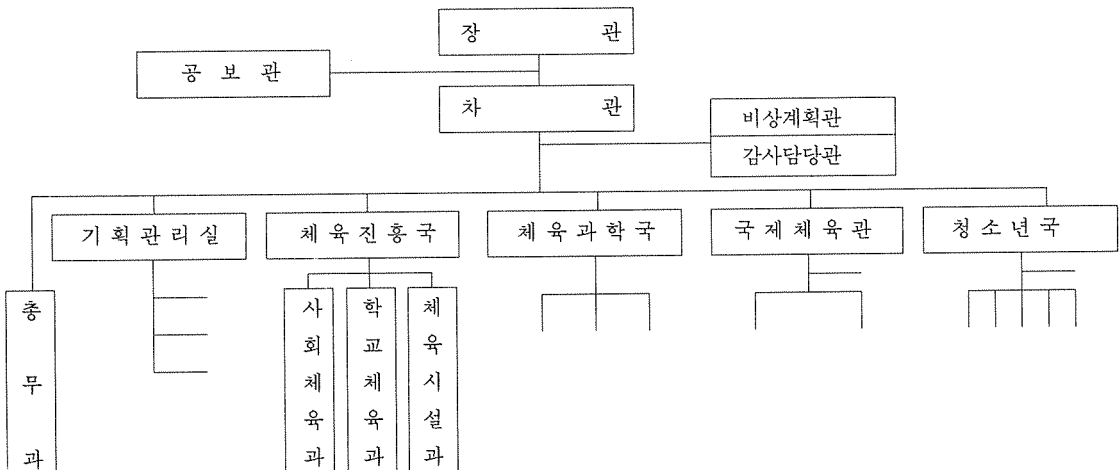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하부조직으로는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담당, 비상계획관, 총무과, 체육진흥국, 체육과학국, 국제체육국 및 청소년국을 두며, 학교보건과 직접 관계되는 조직은 체육진흥국이 된다.

(1) 체육진흥국

(가) 사회체육과

- 1) 사회체육의 진흥 및 직장체육의 지도
- 2) 체육단체의 설립 및 운영의 지도·감독
- 3) 체육도장의 지도·감독
- 4)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영
- 5) 체육유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 6) 국민레크리에이션의 보급
- 7) 국내 체육대회 개최의 지도·감독
- 8) 체육상의 시상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체 육 부 조 직 표 { 1983. 6. 18 대통령령 제12470호 }
{ 정원 225명 }



(나) 학교체육과

- 1) 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도
- 2) 체육계 학교의 육성 및 운영(체육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지도·감독
- 3) 체육특기자의 관리
- 4) 종목별 체육시범학교의 지정 및 운영(체육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지도
- 5) 학생체력검사에 관한 기준설정 및 집행에 대한 지도
- 6)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학교급식의 지도·감독
- 7) 학생영양지도 및 식생활개선
- 8) 학교체육에 관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다) 체육시설과

- 1) 학교체육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도·감독
- 2) 사회체육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도·감독
- 3) 각종 체육장비의 확보
- 4) 경기용구의 표준화설정 및 수입의 추천

다. 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조직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하부조직은 시·도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고 학교보건에 관한 업무를 학무국 사회체육과 보건계에서 관장하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학무국 체육교육과 보건계에서 관장한다.

시·도 교육위원회 조직표

서울	부산	대구·인천·광주·도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부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사무과	사무과	
학무국	학무국	학무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과 체육교육과 (보건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 (보건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 (보건계)
관리국	관리국	관리국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건축과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사무과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제주제외)

라. 시·군교육(구)청 조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행정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군에 교육청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는 하급집행기관으로 교육구청을 두고 있으며 교육청 및 교육구청의 하부조직으로서 학무과와 관리과를 둔다.

학교보건에 관한 업무는 학무과 보건체육계 또는 사회체육계에서 관장한다.

마. 학교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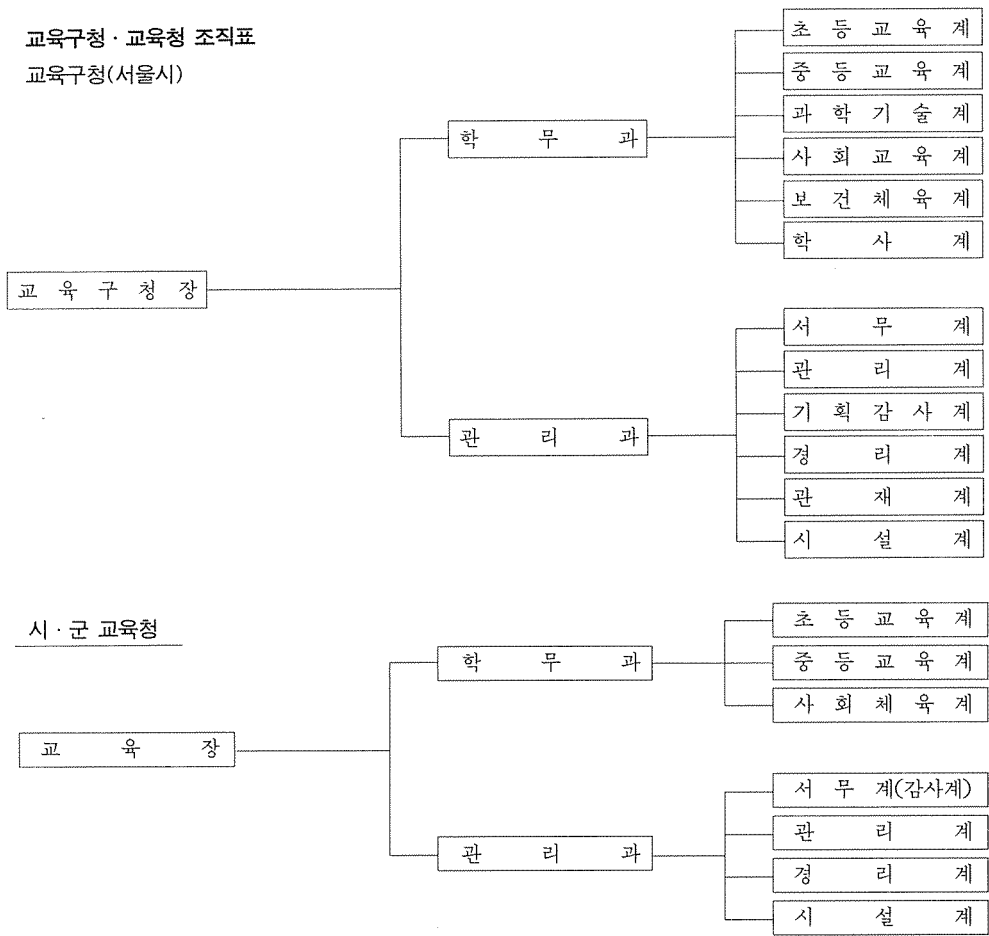
학교의 조직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인문·실업별, 남녀별, 학교규모별, 지역별등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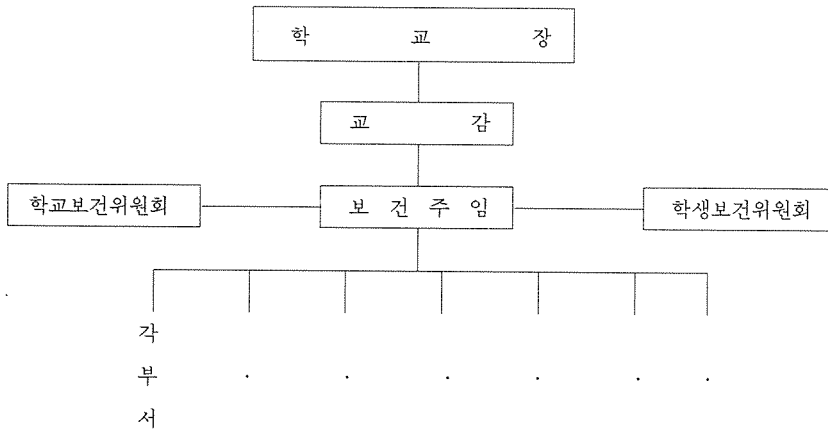
매우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으며,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12학급 이상에, 고등학교에서는 9학급 이상에 체육주임을 두어 체육주임 소속하에서 학교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교보건조직은 전교직원이 참여하여 합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 학교보건관리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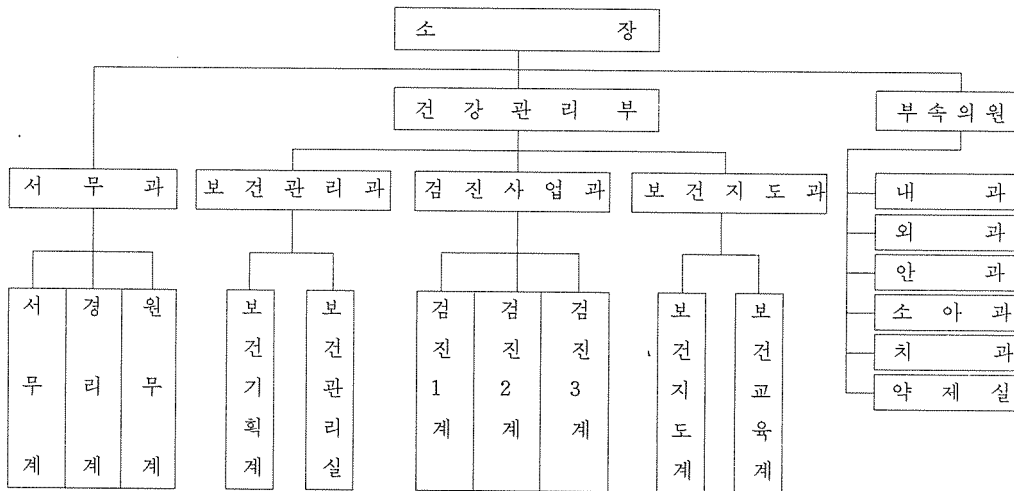
학교보건법 제16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의와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6조에 의한 학교보건관리기구로





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 조직표(1986. 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2066호) 정원 : 93명



서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하 각급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과 체위향상 및 질병예방에 관한 연구관리와 진료를 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 뿐이다. ☆

◇참 고 문 헌◇

① 김지주 : 학교보건행정조직과 인력, 「학교보건실무자과정 교재」 국립보건원, 1988. 21-36
 ② 김종철 : 교육행정의 이론과 원리, 교육과학사, 1982.
 ③ 김윤태 : 교육행정학, 배영사, 1984.
 ④ 신두범 : 행정학원론, 박영사, 1985.

⑤ 대한민국헌법령집 (제14권) 문교부직제 「법제처 편찬」, 법령편찬보급회, 1988.
 ⑥ 대한민국헌법령집(제14권) 체육부직제 「법제처 편찬」, 법령편찬보급회, 1988.
 ⑦ 관보(제10959호), 총무처, 1988.
 ⑧ 문교법전, 교학사, 1988.
 ⑨ 대한민국헌법령집(제14권)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교육위원회직제, 「법제처 편찬」, 법령편찬보급회, 1988.
 ⑩ 서울삼릉국민학교, 학교보건활성화를 위한 양호교사의 직무활성화 방안(학교보건시범운영 보고서), 1988.
 ⑪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자치법규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편찬, 1988.